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0874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주철현 · 문대림 · 송옥주  
한정애 · 임호선 · 이원택  
박지원 · 조계원 · 김문수  
서삼석 · 김원이 · 위성곤  
윤준병 · 이병진 · 송기현  
문금주 의원(16인)

### 제안이유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 심화 및 물류 비용 상승과 수출입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함.

특히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북극해 해빙이 진행되며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화종별 · 선종별 · 항만별로 특화된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 수립이 시급함

이에,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를 체계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되, 화물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거점항만을 균형되게 육성·지원해야 함(안 제3조, 제5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북극항로 개척·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북극항로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가로 하여금 북극항로 개척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 개척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

· 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

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의 개척 및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

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

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

통관제, 쇄빙선 등 필수 인프라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세 관련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지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를 말한다.
2. “북극항로사업자”란 북극항로 운항, 물류·조선, 해양기술, 에너지 등 북극항로 개척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 조약을 준수하며 선박 및 항만, 정보시스템, 환경보호 관련 기술개발 등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화물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북극항로 거점항만을 균형있게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북극항로 개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를 체계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극항로 개척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의 개척을 위한 세제·재정·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8. 북극항로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북극항로위원회) ① 북극항로 개척·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극항로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관련 관계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의 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개척 관련 이해관계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화물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북극항로 거점항만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극항로의 개척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대통령비서실에 과학기술·해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북극항로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북극항로 개척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3. 북극항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4.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북극항로 개척 관련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북극해운정보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제협력) 정부는 북극항로의 개척 및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への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인프라 구축 지원) 정부는 북극항로의 운항을 위한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관제 체계, 쇄빙선 운영 지원 등 필수 인프라의 구축을 지원한다.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